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900
----------	------

제출연월일 : 2020. 7. 14.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로서”로, “승계한다”를 “승계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허가제조사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상속인, 양도인, 합병일부터 종전의 허가제조사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4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제5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제3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p> <p>① (생 략)</p> <p><u><신 설></u></p> <p>② · ③ (생 략)</p>	<p>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p> <p>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p>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① (생 략)</p> <p><u><신 설></u></p> <p>② (생 략)</p>	<p>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는 허가제조사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u>승계한다</u>.</p>	<p>제7조(지위승계) ① ----- ----- <u>자로서</u> ----- ----- ----- <u>승계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u></p>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상속인, 양도인, 합병일부터 종전의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① -----

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7. (생략)
8. 제10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한 경우
9. ~ 19. (생략)

② (생략)

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

1. ~ 4. (현행과 같음)
5. 제7조제1항 -----

--
- 6.·7. (현행과 같음)
8. 제10조제5항 -----

9. ~ 1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① -----

다)하거나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폐쇄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6. (생략)

7. 제10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경우

8. ~ 17. (생략)

② (생략)

제10조(폐기)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제12조(수입규제) ① ~ ③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제1항 -----

--

5.·6. (현행과 같음)

7. 제10조제5항 -----

8.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폐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2조(수입규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 ⑦ (생략)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자

4. ~ 7. (생략)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
----- 제5조제3항 및 제4항-----.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

-----.

1. 2. (현행과 같음)

3. -----
----- 제5항 -----

4. ~ 7. (현행과 같음)

제30조(과태료) ① -----

-----.

1. 제7조제1항-----

2.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